|  |  |  |
| --- | --- | --- |
|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위내가공업무 전개에 관한 공고**해관총서공고2016년제68호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하 “구역”이라 약칭) 내 위내가공업무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에서 일컫는 위내가공은 구역 내 기업이 경내(구역 외)기업(이하 “구역 외 기업”으로 약칭)의 위탁을 받아 구역 외 기업이 제공하여 구역 내에 들여온 화물을 가공하고, 가공된 후의 제품을 모두 경내(구역 외)로 운송하여, 가공비를 수취하고 해관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내가공화물은 위내가공용 원재료(경내 구역 외에서 들어온 비(非)보세원재료와 구역 내 기업의 보세원재료 포함), 완성품, 불량품(폐품 포함), 부산물과 자투리를 말한다. 2. 수출가공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주오(주강-마카오)국제공업구 주해원구 및 중국-카자흐스탄 호르고스(Khorgos)국경합작센터 중국측 부대구역 등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내 기업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여 위내가공을 전개할 경우 본 공고를 적용한다. 2.1 법률 및 법규와 규정(규칙)에서 허가한 경우2.2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경우2.3 국가유관부처의 비준을 거친 경우구역 내 보세검사 및 유지보수업무는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 보세유지보수업무 관련 감독관리문제에 관한 공고>(해관총서공고2015년제59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3. 구역 내 기업이 위내가공업무를 전개할 경우 위내가공 전용 전자장부(H장부)를 개설하여야 한다. 위내가공화물은 기타 보세화물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4. 위내가공용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구역 외 기업이 제공하며 만약 구역 내 기업의 보세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구역 내 기업이 사전에 해관에 비안(등록)하여야 한다.5. 위내가공용 원재료가 경내(구역 외)에서 구역 내로 들어올 경우, 구역 외 기업은 수출화물통관단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감독관리방식은 “수출원료가공”(감독관리코드 1427)이다. 동시에 구역 내 기업도 수입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원재료 출입구”(코드5000)이다.6. 경내(구역 외)에서 구역 내로 들어온 위내가공용 원재료가 수출관세 징수상품에 해당할 경우,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수속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사무 담보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7. 위내가공 완성품을 경내(구역 외)로 운송할 때, 구역 외 기업은 수입화물통관단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수출원료가공”(감독관리코드 1427)로 기입한다. 위내가공 완성품과 가공증치(부가)비용으로 나누어 상품항목에 기입하여 신고한다. 위내가공 완성품 상품의 수량은 실제 구역 내에서 반출되는 수량이고, 감면세 징수방식은 “전액면세”로 한다. 가공증치(부가)비용 상품의 수량은 0.1이고, 감면세 징수방식은 “규정에 따른 세금징수”로 하며, 상품명칭과 상품일련 번호란에 위내가공 완성품의 실제명칭과 코드를 기준으로 기입하여 신고한다.동시에 구역 내 기업은 수출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고, 감독관리방식은 “완성품 출입구”(코드5100)이며, 상품명칭은 위내가공 완성품의 실제명칭에 따라 기입하고 신고한다.가공증치(부가)비용 관세지급필가격은 구역 내 발생한 가공비와 보세원재료비에 기초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 중, 보세원재료비는 위내가공 과정 중 사용한 모든 보세원재료의 금액을 말하며, 완성품, 불량품(폐품 포함), 부산물, 자투리 등을 포함한다. 8. 경내(구역 외) 에서 구역 내로 들어와 위내가공 후 잔여 원재료를 경내(구역 외)로 반송할 경우, 구역 외 기업은 수입화물통관단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수출원료가공”(코드1427)이다. 동시에 구역 내 기업도 수출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원재료 출입구”(코드5000)이다.9. 위내가공에 필요한 구역 내 기업의 보세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구역 내 기업은 수입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원재료 진출구”(코드 5000)이고, 주관 해관이 장부를 증가하는 것을 심사∙결정한다; 위내가공에 이미 사용된 구역 내 기업의 보세원재료의 경우, 구역 내 기업이 수출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원재료 진출구”(코드 5000)이고, 주관 해관이 장부를 감소시키는 것을 심사∙결정한다10. 경내 출입구에서 신고할 경우,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통관단 작성규범>(해관총서2016년제20호공고)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통관단, 수(출)입화물비안(등록)목록의 운송방식란에 기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1. 위내가공으로 생산된 자투리, 불량품(폐품 포함), 부산물 등은 경내(구역 외)로 반송하여야 한다. 보세원재료로 생산된 자투리, 불량품(폐품 포함), 부산물이 고체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환경보호부, 상무부,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질검총국령제12호)에 따라 구역 내에서 반출하는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12. 구역 내 기업은 전자대장과 신고데이터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주관 해관에 장부 핵소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특별히 이를 공고한다.해관총서2016년11월25일 |  | **关于海关特殊监管区域内开展委内加工业务的公告**海关总署公告2016年第68号 　　为规范海关特殊监管区域（以下简称“区域”）内委内加工业务管理，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本公告所称委内加工，是指区域内企业接受境内（区域外）企业（以下简称”区域外企业“）委托，对区域外企业提供的入区货物进行加工，加工后的产品全部运往境内（区域外），收取加工费，并向海关缴纳税款的行为。委内加工货物是指委内加工用料件（包括来自境内区域外的非保税料件和区域内企业保税料件）、成品、残次品（包括废品）、副产品和边角料。　　二、出口加工区、保税港区、综合保税区、珠澳跨境工业区珠海园区以及中哈霍尔果斯边境合作中心中方配套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符合以下条件之一开展委内加工的，适用本公告：　　（一）法律、法规和规章允许的；　　（二）经国务院批准的；　　（三）经国家有关部门批准的。　　区域内保税检测、维修业务按照《海关总署关于海关特殊监管区域内保税维修业务有关监管问题的公告》（海关总署公告2015年第59号）的有关规定办理。　　三、区域内企业开展委内加工业务，应设立委内加工专用电子账册（H账册）。委内加工货物应当与其他保税货物分开管理，分别存放。　　四、委内加工用料件原则上由区域外企业提供，若需使用区域内企业保税料件，区域内企业应当事先向海关报备。五、委内加工用料件由境内（区域外）入区时，区域外企业应当填报出口货物报关单，监管方式为“出料加工”（代码1427），同时区域内企业应当填报进境货物备案清单，监管方式为“料件进出区”（代码5000）。　　六、由境内（区域外）入区的委内加工用料件属于征收出口关税商品的，企业应当提供担保，具体手续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事务担保条例》有关规定办理。　　七、委内加工成品运回境内（区域外）时，区域外企业应当填报进口货物报关单，监管方式为“出料加工”（代码1427），委内加工成品和加工增值费用分列商品项申报。委内加工成品商品项数量为实际出区数量，征减免税方式为“全免”；加工增值费用商品项数量为0.1，征减免税方式为“照章征税”，商品名称与商品编号栏目按委内加工成品的实际名称与编码填报。　　同时区域内企业应当填报出境货物备案清单，监管方式为“成品进出区”（代码5100），商品名称按委内加工成品的实际名称填报。　　加工增值费用完税价格应当以区域内发生的加工费和保税料件费为基础确定。其中，保税料件费是指委内加工过程中所耗用全部保税料件的金额，包括成品、残次品（包括废品）、副产品、边角料等。　　八、由境内（区域外）入区的委内加工剩余料件运回境内（区域外）时，区域外企业应当填报进口货物报关单，监管方式为“出料加工”（代码1427），同时区域内企业应当填报出境货物备案清单，监管方式为“料件进出区”（代码5000）。　　九、对委内加工所需使用的区域内企业保税料件，区域内企业应当填报进境货物备案清单，监管方式为“料件进出区”（代码5000），并由主管海关核增账册；对委内加工已耗用的区域内企业保税料件，区域内企业应当填报出境货物备案清单，监管方式为“料件进出区”（代码5000），并由主管海关核减账册。　　十、在自境内进出区申报时，企业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填制规范》（海关总署2016年第20号公告）的规定填报进出口货物报关单、进（出）境货物备案清单的运输方式栏目。　　十一、委内加工产生的边角料、残次品（包括废品）、副产品等应当运回境内（区域外）。保税料件产生的边角料、残次品（包括废品）、副产品属于固体废物的，应当按照《固体废物进口管理办法》（环境保护部、商务部、发展改革委、海关总署、质检总局令第12号）办理出区手续。　　十二、区域内企业应当根据电子底账和申报数据定期向主管海关办理账册核销手续。　　本公告自公布之日起施行。特此公告。海关总署　　2016年11月25日　　 　　 |